

신구조문대비표
「건축법 시행령」

건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6909호, 2016.1.19., 일부개정]	건축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6974호, 2016.2.11., 일부개정]
제14조(용도변경) ① ~ ④ (생 략)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6.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. ~ 라. (생 략) <u><신 설></u> 7. ~ 9. (생 략) ⑥·⑦ (생 략)	제14조(용도변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 - - - - - - - - - - - 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 - - - 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<u>마. 야영장 시설</u> 7. ~ 9. (현행과 같음) ⑥·⑦ (현행과 같음)
제115조의3(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) 법 제81조 <u>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</u>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1.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.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 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 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.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 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[전문개정 2008.10.29]	제115조의3(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) ① 법 제80조 <u>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</u> <u>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 다만, 건축</u> <u>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, 낮</u> <u>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</u> <u>다.</u> 1.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: 100분의 80 2.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: 100분의 90 3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: 100분의 100 4.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: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“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 1.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(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2.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(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3.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 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 가시킨 경우(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 우로 한정한다) 4.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[본조신설 2016.2.11] [종전 제115조의3은 제115조의5로 이동]

<신 설>	제115조의4(이행강제금의 감경)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1.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.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(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.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(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,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) 4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(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) 5.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.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(처리시설을 포함한다)의 경우 7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 1.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: 100분의 50 2. 제1항제7호의 경우: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: 100분의 80 2.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: 100분의 60[본조신설 2016.2.11]
<신 설>	제115조의5(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) 법 제8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.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

	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.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[전문개정 2008.10.29] [제115조의3에서 이동]
제1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·2. (생략) ④·⑤ (생략)	제1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 - - - - 말한다) 또는 동장·읍장·면장(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·읍장·면장으로 한정한다)- - - - - 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